

서울시설공단 정관

	제정 1983. 8. 1		
개정	1989. 6.27 규정 제73-1호	2001. 3.24 규정 제341호	2009. 1. 1 규정 제623호
	1990. 3. 3 규정 제80-1호	2001. 3.24 규정 제341호	2009. 8. 1 규정 제637호
	1992. 4. 3 규정 제124호	2001. 4.12 규정 제343호	2009.11. 1 규정 제640호
	1993. 1.26 규정 제131호	2001. 6.19 규정 제365호	2010. 3. 3 규정 제648호
	1994.12. 2 규정 제177호	2001. 9. 5 규정 제369호	2010. 6. 1 규정 제652호
	1995. 8.22 규정 제189호	2001.10.16 규정 제374호	2010. 7.30 규정 제658호
	1996. 4. 1 규정 제197호	2002. 1. 8 규정 제381호	2011. 3. 1 규정 제663호
	1996. 7.31 규정 제206호	2002. 4.23 규정 제384호	2011. 7.18 규정 제678호전부개정
	1997. 1.15 규정 제224호	2002. 7.29 규정 제401호	2011.12.14 규정 제683호
	1997. 3.10 규정 제228호	2002.11.15 규정 제414호	2012. 4.10 규정 제690호
	1997. 5.27 규정 제231호	2002.12.31 규정 제418호	2012. 5. 7 규정 제702호
	1997. 7.26 규정 제240호	2003. 3. 3 규정 제422호	2012.12.27 규정 제709호
	1997.10.21 규정 제257호	2003. 6.10 규정 제431호	2013.12.17 규정 제725호
	1997.11.24 규정 제260호	2003. 8.13 규정 제433호	2014. 2.28 규정 제730호
	1998. 1. 6 규정 제261호	2003.10. 7 규정 제435호	2014.10.30 규정 제753호
	1998. 2.23 규정 제266호	2003.11.20 규정 제462호	2015. 3.31 규정 제772호
	1998. 8.20 규정 제270호	2004. 3.20 규정 제465호	2015. 7.31 규정 제779호
	1998. 9.29 규정 제273호	2004. 6.11 규정 제469호	2015.12.21 규정 제783호
	1999. 3.15 규정 제278호	2004.11. 8 규정 제479호	2015.12.21 규정 제784호
	1999. 4.15 규정 제282호	2005. 1.21 규정 제488호	2016. 3.11 규정 제787호
	1999. 6.21 규정 제285호	2005. 4.18 규정 제498호	2016. 6.27 규정 제797호
	1999. 8.20 규정 제301호	2005. 8. 2 규정 제509호	2016.12.16 규정 제840호
	1999.10.21 규정 제304호	2005.10.21 규정 제511호	2017. 4. 1 규정 제853호
	2000. 6. 2 규정 제316호	2006. 3.10 규정 제551호	2017. 4.26 규정 제855호
	2000. 7.24 규정 제323호	2007. 1.10 규정 제570호	2018. 5.21 규정 제927호
	2000.10. 5 규정 제330호	2007. 2.23 규정 제572호	2018.10. 1 규정 제942호
	2000.11.27 규정 제332호	2007. 4.11 규정 제573호	
	2001. 3.15 규정 제339호	2007.10. 1 규정 제592호	
		2008. 1. 3 규정 제6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서울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공단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수권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서울특별시에서 출자한다. <개정 2016.3.11.>

②수권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5조(공고방법)** ① 공단이 공고할 사항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② 공단의 고시 사항은 시보에 게재한다.

제2장 사업

제6조(자체사업)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9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2인 이내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이사로 둔다. (개정 2016.6.27, 2016.12.16.) (단서신설 2016.12.16.)

- ②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6.12.16.)

-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위원회는 추천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한다.
-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개정 2018.5.21.>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그 밖에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일부 경미한 소송사건(소액사건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조직 및 정원

제22조(조직 및 정원) 공단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2012.4.10, 2012.5.7, 2012.12.27, 2013.12.17, 2014.2.28, 2014.10.30, 2015.3.31, 2015.7.31, 2015.12.21)

제5장 이사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공단체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장·단기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일시 차입한도액 및 차입한도 증액변경에 관한 사항
8. 외국차관의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2.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3.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단, 이사회 의결 후 제기 또는 신청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의 소송 및 화해의 경우는 생략 할 수 있다.
14.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5. 이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
16.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6.12.16.)
17. 기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16호를 제17호로 이동, 2016.12.16)

제25조(이사회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26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16.)
- ②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 제27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5.12.21)

제6장 재무회계

제3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31조(예산 및 결산)**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 지체없이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제33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에 잉여금(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시 일반회계에 납입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사업연도에 결손(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단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공단의 내규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7장 공단체 등 발행

제35조(공단체 발행) ①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공단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체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공단체의 발행목적
2. 공단체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공단체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제36조(차관)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37조(자금차입)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1983. 8. 17)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최초의 사업년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1983.12.31 까지로 한다.
- ③(설립년도 예산) 공단의 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1989. 6.27)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 3)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4. 3)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한 행위 또는 기타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1994.12. 2)

이 정관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 기구중 도로관리부의 신설과 별표2 정원의 도로관리과와 도로시설과에 두는 정원 40명(기술직 1급 1, 기술직 2급 1, 기술직 4급 3, 사무직 5급 1, 기술직 5급 5, 기능직 1등급 28, 기능직 3등급 1)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5)

이 정관은 199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정원표 중 도로관리처에 증원되는 정원 41명(사무직 3급1, 4급1, 5급4, 기술직 4급1, 업무직 6급21, 7급12, 9급1)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설관리처에 증원되는 59명(사무직4급5, 5급5, 기술직 5급5, 업무직 6급13, 7급13, 8급13, 9급5)은 각 상가 인수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15)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한시정원) 여미지식물원의 관리에 필요한 정원(별정직1급 또는 2급1명, 별정직 3급2명, 4급이하 77명, 총 80명)은 여미지식물원 매각시까지, 청평화상가의 관리에 필요한 정원(별정직 4급이하 11명)은 청평화상가 매각시까지, 장묘시설확충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2급 또는 3급 1명, 사무직 4급이하 2명, 기술직 4급이하 3명, 업무직1명, 총7명)은 제2화장장 준공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기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제33조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도 199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70명을 초과하지 못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4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 칙(1999. 4.15)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한시정원) 여미지식물원의 관리에 필요한 정원(별정직1급 또는 2급1명, 별정직 3급2명, 4급이하 74명, 총 77명)은 여미지식물원 매각시까지, 청평화상가의 관리에 필요한 정원(별정직 4급이하 11명)은 청평화상가 매각시까지, 장묘시설확충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2급 또는 3급 1명, 사무직 4급이하 2명, 기술직 4급이하 3명, 업무직1명, 총7명)은 제2화장장 준공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6.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20)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정관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2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청계천3-5가 화물조업주차장, 택배센터, 은평권역 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정원(일반직 사무직렬 4급이하 4명, 업무직 23명 총 27명)은 각각 해당시설의 운영개시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한시정원) 여미지식물원 관리에 필요한 정원(별정직 1급 또는 2급 1명, 별정직3급 2명, 별정직 4급이하 72명, 총77명)은 여미지식물원 매각시까지, 청평화상가의 관리에 필요한 정원(별정직 4급이하 11명)은 청평화상가 매각시까지, 장묘시설확충에 필요한 정원(일반직 사무직렬 2급 또는 3급 1명을 포함한 총7명)은 제2화장장 준공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규정의 개정) 공단 직제규정 제13조의 별표의 개정은 이 정관 제33조의 별표 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6.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어린이대공원 동물사 관리에 필요한 정원 (업무직 1명)은 2001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지하도상가 관리에 필요한 정원(업무직 19명)은 2000년 민간위탁대상 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 완료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어린이대공원 시설개선공사 감독에 필요한 정원(기술직 1명)은 2001년부터 시행하되, 2003년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공단 직제규정 별표2는 정관 제33조의 별표2의 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7.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 별표1, 별표2의 개정은 이 정관 제33조의 별표 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0.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 별표2의 개정은 이 정관 제33조의 별표 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1.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 별표1,2의 개정은 이 정관 제33조의 별표 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3.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조정) 추모공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장묘시설 확충에 필요한 정원 총15명 (일반직 사무직렬 1급1, 2급2, 4급이하 8, 일반직 시설직렬 3급1, 시설, 설비, 농림직렬 4급이하 3명)은 제2 화장장 준공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제규정 등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3.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조정) 청평화상가 매각에 따라 청평화상가 관리에 필요한 정원(별정직 4급이하 11명)과,

2000년 지하도상가 민간위탁시까지 두도록 한 정원(4급이하 19명)은 감원하고 이와 별도로 지하도상가 관리에 필요한 정원(4급이하 11명)은 추가 민간위탁시까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공단 직제규정 별표1, 별표2는 정관 제33조의 별표1, 별표2의 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4.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조정)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3급 1명, 4급이하 12명, 설비직 2급 1명, 4급이하 11명, 특수직 1급 1명, 4급이하 6명 등 총 32명)은 교통관리센터가 정규조직으로 개편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9.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10.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1.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4.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화물조업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3급1명, 4급이하 35명, 총36명)의 감원은 해당시설의 민간위탁개시일부터 시행하며, 남산권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원(설비직 4급이하 1명, 특수직 4급이하 2명, 총3명),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관리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4급이하 2명, 설비직 4급이하 3명, 총5명),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원(특수직 4급이하 1명)은 해당시설의 운영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조정)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원(특수직 4급이하 1명)은 교통관리센

터가 정규조직으로 개편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7.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지원업무 관리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3급 1명, 4급이하 3명, 조사직 100명 등 총 104명)은 해당업무의 운영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1.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조정) 지하도상가 관리에 필요한 정원(4급이하 8명)은 추가 민간위탁시까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3.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6.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조정) 영등포3가 지하도상가 관리에 필요한 정원(4급이하 관리기술 5명)은 추가 민간위탁 시까지, 지하도상가 임대관리에 필요한 정원(4급이하 일반행정 2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8.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임명된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10.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독립사업소는 시장이 지정한 소장이 임명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독립사업소 운영관련 규정준용) 독립사업소 운영을 위한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공단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3.11.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3.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환승주차장 민간위탁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대문운동장 관리권변경에 따른 정원감원(일반직 7명)은 관리권 변경일부터 시행하고, 도봉산역 견인보관소 폐쇄에 따른 정원감원(일반직 7명, 청경직 1명)은 폐쇄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총무이사, 시설관리이사, 기술이사)가 행한 행위 또는 기타 상임이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본부장(경영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기술본부장)이 행한 행위 또는 본부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정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소장) 및 부소장(관리처장)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의 조정)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원(사무직 4급이하 12명, 설비직 4급이하 11명, 특수직 4급이하 6명 등 총 29명)은 교통관리센터가 정규조직으로 개편시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1.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청사경비 및 주차장, 조성묘지 수목관리의 민간위탁(분사)에 따른 감축 정원(일반직 4급이하 관리행정 9명, 관리기술 1명, 총10명)과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민간용역방법 개선에 따른 감축정원(일반직 4급이하 일반행정 3명, 관리기술 15명, 총18명) 및 여미지식물원 식당, 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 한시정원(별정직 4급이하 9명)은 각각 민간위탁(분사)이 이루어질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분사의 경우 모집 인원이 감축정원 10명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 정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제33조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6월 30일까지는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의 조정) 영등포3가 지하도상가관리에 필요한 한시정원(4급이하 관리기술 5명)은 감원하고, 여미지식물원관리에 필요한 한시정원(별정직 1급 또는 2급 1명, 별정직 3급 2명, 별정직 4급이하 65명, 총 68명)은 서울시의 매각 또는 보존 여부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결정되어 시행 될 때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4.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조정) 여미지식물원관리에 필요한 한시정원(별정직 1급 또는 2급 1명, 별정직 3급 2명, 별정직 4급이하 65명, 총 68명)은 서울시의 매각에 따라 감원하되 매각대금 잔금납부후 소유권 이전시에 시행한다.

부 칙(2005. 8. 2)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3.1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청계천문화관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개정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2.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결방법)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2007. 4.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고조치) 어린이대공원 질서유지 업무의 용역전환에 따른 청경직 정원감축은 용역전환 시점에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8.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3.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원 감축인원은 2009. 12.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7.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직제규정 “별표2”의 개정은 이 정관 제22조의 “별표2” 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에서의 “일용직”,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기간직”, “기간직 및”, “및 기간직”, “또는 기간직”은 삭제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7.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직제규정 제14조(정원) “별표2”의개정은 이 정관 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와 직제규정 제6조(이사 등) 각 호의 순서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3.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수권자본금)는 2016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규정 제14조(정원)의 “별표2”를 정관 제22조의 “별표2”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16. 6.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다른 규정이나 내규의 개정은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장 및 회의소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와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제7조(기능)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

부 칙(2017.4.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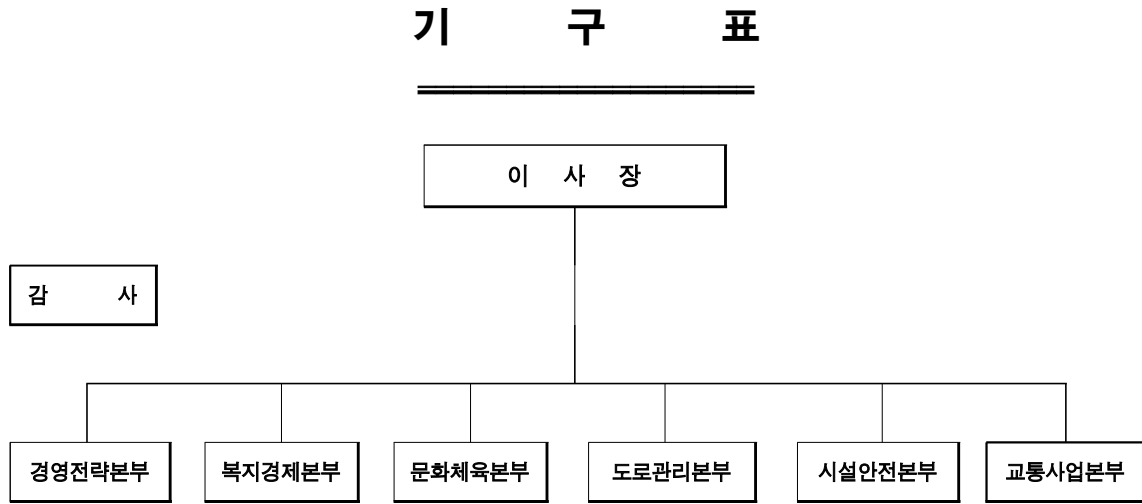
부 칙(2018.5.2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2조 관련) (2013.12.17, 2015.12.21, 2016.6.27.)



<별표 2> (제22조 관련) (2012.4.10, 2012.5.7, 2012.12.27, 2013.12.17, 2014.2.28, 2014.10.30, 2015.3.31, 2015.7.31, 2015.12.21, 2016.3.11, 2016.6.27, 2017.4.1, 2018.5.21., 2018.10.1)

정 원 표

【총 정원 : 2,757명】

임원 및 일반직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일 반 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2,757	6	2,751	25	45	2,681

※ 부서별 정원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

<별표 3> (삭 제) (2012.5.7)